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15

발의연월일: 2024. 6. 20.

발 의 자 : 남인순 · 전진숙 · 윤종군

김남희 • 박희승 • 백승아

김현정 • 이재관 • 김성회

정동영ㆍ이수진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당의 성립요건으로 수도에 두는 중앙당 및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규정하고 있어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하는 지역당 설립이 불가능함.

2004년에 지구당을 폐지하여 지역주민의 다양한 여론 수렴, 정책 개발 등이 어렵고 지역정치가 약화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지방자치와 지역균형 발전을 활성화하고, 지역의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당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지역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을 둘 수 있도록 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시·도당에 정책연구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지역과 밀접한 생활정치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정당은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소재한 시·도당 및 국회 의원지역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으로 구성함(안 제3조).
- 나. 지역당의 창당준비위원회는 2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하고, 법 정당원수는 100명 이상으로 함(안 제6조 및 제18조제1항).
- 다. 지역당에 2명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제1항).
- 라. 시·도당은 지역별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719호) 및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 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시·도당(이하 "시·도당"이라 한다)으로"를 "시·도당(이하 "시·도당"이라 한다) 및 「공직선거법」 제25조에 따른 국회의원지역 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이하 "지역당"이라 한다)으로"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제18조(시·도당의 법정당원수)"를 "제18조(시·도당 및 지역당의 법정당원수)"로 한다.

제6조 중 "100명 이상의"를 "100명 이상의, 지역당의 경우에는 20명이상의"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시·도당의 창당승인"을 "시·도당 및 지역당의 창당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시·도당"을 "시·도당 및 지역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9. 지역당의 소재지와 명칭
- 10. 지역당의 대표자의 성명·주소

제13조의 제목 "시·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을 "시·도당 및 지역당의 등록신청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당"을 "시·도당 및 지역당"으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조(시·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을 "제 13조(시·도당 및 지역당의 등록신청사항)"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시·도당의 법정당원수"를 "시·도당 및 지역당의 법정당원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한다."를 "하고, 지역당은 100명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도당"을 "시·도당 또는 지역당"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본문·단서 및 제4항 중 "시·도당"을 각각 "시·도당 및 지역당"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과 제2항 전단 및 제3항 전단 중 "시·도당"을 각각 "시·도당 및 지역당"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시·도당"을 "시·도당 및 지역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시·도당"을 "시·도당 및 지역당"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시·도당"을 각각 "시·도당 또는 지역당"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당"을 각각 "시·도당 또는 지역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도당"을 "시·도당, 지역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도당"을 "시·도당 및 지역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도당"을 "시·도당 및 지역당"으로 한다. 제26조 전단 중 "시·도당"을 "시·도당 및 지역당"으로 한다.

제27조의2제1항 중 "시·도당"을 "시·도당 및 지역당"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정한다"를 "정하고, 지역당에는 2명을 초과할 수 없다"로 한다.

제35조제1항 전단 중 "시·도당"을 각각 "시·도당 및 지역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당과 시·도당은 제17조(법정시·도당수) 및 제18조(시·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을 "중앙당과 시·도당 및 지역당은 제17조(법정시·도당수) 및 제18조(시·도당 및 지역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으로 한다.

제37조제3항 본문 중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별"을 "읍·면·동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시·도당"을 "지역당"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한다."를 "하고, 시·도당은 지역별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할수 있다."로 한다.

제44조제1항제1호 본문 중 "제18조(시·도당의 법정당원수)"을 "제18조(시·도당 및 지역당의 법정당원수)"로 한다.

제46조의 제목 "시·도당 창당승인의 취소"를 "시·도당 및 지역당 창당승인의 취소"로 하고, 같은 조 중 "시·도당"을 "시·도당 및 지역당"으로 한다.

제47조 중 "시·도당"을 "시·도당 또는 지역당"으로 한다.

제59조제1항제1호 중 "제13조(시·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을 "제13조(시·도당 및 지역당의 등록신청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시·도당"을 "지역당"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정당은 수도에 소재	제3조(구성)
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	
·도에 각각 소재하는 <u>시·도</u>	<u>시·도당</u>
당(이하 "시·도당"이라 한다)	(이하 "시·도당"이라 한다) 및
<u>으로</u> 구성한다.	「공직선거법」 제25조에 따른
	국회의원지역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이하 "지역당"이라 한
	<u>다)으로</u>
제4조(성립) ① (생 략)	제4조(성립)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등록에는 제17조(법	2
정시·도당수) 및 <u>제18조(시·</u>	<u>제18</u> 조(시 •
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을	도당 및 지역당의 법정당원수)
구비하여야 한다.	
제6조(발기인) 창당준비위원회는	제6조(발기인)
중앙당의 경우에는 200명 이상	
의, 시·도당의 경우에는 <u>100명</u>	<u>100</u> 명
<u>이상의</u> 발기인으로 구성한다.	이상의, 지역당의 경우에는 20
	명 이상의
	– .
제9조(<u>시·도당의 창당승인</u>) <u>시·</u>	제9조(<u>시·도당 및 지역당의 창</u>
<u>도당</u> 의 창당에는 중앙당 또는	<u>당승인</u>) <u>시·도당 및 지역당</u>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 ① 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8. (생략)

<신 설>

<신 설>

- ② · ③ (생략)
- 제13조(시·도당의 등록신청사항)
 - ① <u>시·도당</u>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5. (생략)
 - ② · ③ (생 략)
- 제14조(변경등록)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및 제13조(시 ·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의 등록신청사항)의 등록신청사항 중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한다.
 - 1. ~ 5. (생략)
- 제18조(<u>시·도당의 법정당원수</u>) ① 시·도당은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

제	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①
	1. ~ 8. (현행과 같음)
	9. 지역당의 소재지와 명칭
	10. 지역당의 대표자의 성명・
	<u>주소</u>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	13조(시・도당 및 지역당의 등
	록신청사항) ① 시·도당 및
	지역당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	14조(변경등록)
	<u>제13조</u>
	(시·도당 및 지역당의 등록신
	<u>청사항)</u>
	1. ~ 5. (현행과 같음)
제	18조(<u>시·도당 및 지역당의 법</u>
	<u>정당원수</u>) ①
	<u>하고, 지역당은 10</u>

0명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

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 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 은 당해 <u>시·도당</u>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제19조(합당) ①・② (생 략)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합당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소속 시·도당도 합당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신설합당인 경우에는 합당등록신청일부터 3월 이내에 시·도당 개편대회를 거쳐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④ 신설합당된 정당이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 에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당해 <u>시·도당</u>은 소 멸된 것으로 본다.
- ⑤ (생략)
- 제23조(입당) ① 당원이 되고자 저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u>시</u> <u>• 도당</u>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

2
시·도당 또는 지역당
 데19조(합당) ①·② (현행과 같 음)
3
<u>시·도당 및</u>
<u>지역당</u>
시·도당 및 지역당
4
ין ברן דו או בר
시·도당 및 지 역당
⑤ (현행과 같음)
세23조(입당) ①
<u>\lambda</u>
도당 및 지역당

회에 입당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8세 미만인 사람이 입당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

- 1. ~ 3. (생략)
- ②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당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원자격 심사기관의 심의를 거쳐 입당허가 여부를 결정하여당원명부에 등재하고,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대표자는 당원이 된 자의 요청이었는 경우 당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당의 효력은 입당신청인이 당원명부에등재된 때에 발생한다.
- ③ 입당신청인은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가 입당원서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당심의를 지연하거나 입당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앙당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

·.
1. ~ 3. (현행과 같음)
② <u>시·도당 및 지역당</u>
- <u>시·도당 및 지역당</u>
③ <u>시·도당</u>
<u> 및 지역당</u>

당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입당허가 여부를 심사하여입당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시·도단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입당신청인을 당원명부에 등재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입당의 효력은 입당원서가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에 접수한 때에 발생한다.

④ (생 략)

- 제24조(당원명부) ① <u>시·도당</u>에 는 당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 다.
 - ② 중앙당은 <u>시·도당</u>의 당원 명부에 근거하여 당원명부를 전산조직에 의하여 통합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u>시·도당</u>의 당원명부와 중앙당이 전산조직에 의하여 관리하는 당원 명부가 일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원명부의 효력은 <u>시·도</u>당의 당원명부가 우선한다.

<u>시·도당 및 지역당</u>
④ (현행과 같음)
제24조(당원명부) ① <u>시·도당 및</u>
제24조(당원명부) ① <u>시·도당 및</u> <u>지역당</u>
<u>지역당</u>
<u>지역당</u>
지역당
지역당
지역당
지역당
지역당
지역당
지역당

③ • ④ (생 략)

제25조(탈당) ① 당원이 탈당하고 저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소속 시·도당에 탈당신고를 하여야 하며, 소속 시·도당에 탈당신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중앙당에 탈당신고를 할 수 있다.

- 1. ~ 3. (생략)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탈당의 효력은 탈당신고서가 소속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접수된 때에 발생한다.
- ③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당해 시·도당은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 소하고, 탈당증명서를 교부하여 야 한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 앙당이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탈당증명서를 교 부하고, 해당 <u>시·도당</u>에 통보 하여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 하게 하여야 한다.

제26조(탈당원명부) 시·도당에는 저

③ · ④ (현행과 같음)
ᆌ25조(탈당) ①
<u>시·도당 또는 지역당</u>
<u>시·도</u>
<u>당 또는 지역당</u>
,
1. ~ 3. (현행과 같음)
②
시 · 도당, 지역당
3
<u>시·도당 및 지역당</u>
·
4
시·도당 및 지역당
<u> </u>
데26조(탈당원명부) <u>시·도당 및</u>

탈당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탈당원명부는 당원명 부에 탈당일자를 기재하는 것 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7조의2(입당원서·탈당신고서의 보관 및 폐기) ① 시·도당으로 및 폐기) ① 시·도당으로 당원명부·탈당원명부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입당원서 또는탈당신고서가 접수된 지 5년이지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이를 전자매체 등으로 보관할수있다.

② (생 략)

제30조(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 ① 정당에 둘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은 중앙당에는 10 0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도당에는 총 100인 이내에서 각 시·도당별로 중앙당이 <u>정</u>한다.

② ~ ④ (생 략)

제35조(정기보고) ① 중앙당과 <u>시</u> •도당은 매년 12월 31일 현재

-	지역당
-	
-	
-	
-	- .
제2	27조의2(입당원서·탈당신고서
	의 보관 및 폐기) ① <u>시·도당</u>
-	및 지역당
-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	30조(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 ①
-	
-	
-	
-	정하고, 지
	역당에는 2명을 초과할 수 없
	 다.
_	_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	35조(정기보고) ① <u>시</u>
	·도당 및 지역당

로 그 당원수 및 활동개황을 다음 연도 2월 15일(시·도당) 은 1월 31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당은 당해 연도의 정책추진내용과 그 추진결과 및 다음 연도의 주요정책추진 계획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중앙당과 시·도당은 제17 조(법정시·도당수) 및 제18조 (시·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 건에 흠결이 생긴 때에는 흠결 이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③ · ④ (생 략) 제37조(활동의 자유) ①·② (생 폭 략)
 - ③ 정당은 <u>국회의원지역구 및</u>
 <u>자치구·시·군</u>, <u>읍·면·동별</u>
 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누구든지 <u>시·도당</u> 하부
 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

<u>시·도당 및 지역당</u>
② 중앙당과 시·도당 및 지역
<u>당은 제17조(법정시·도당수)</u>
및 제18조(시·도당 및 지역
<u>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u>
<u>.</u>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37조(활동의 자유) ①・② (현
행과 같음)
③ <u>읍·면·동별</u>
<u>지역당</u>

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운영)
①「정치자금법」 제27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이하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이라 한다)은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이하 "정책연구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생략)

- 제44조(등록의 취소) ① 정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 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 1. 제17조(법정시·도당수) 및
 제18조(시·도당의 법정당원
 수)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된 때. 다만, 요건의 흠결이 공직선거의 선거일 전 3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운영)
们
하고, 시·도당은 지역별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을 촉진
하기 위하여 별도 법인으로 정
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
<u>다</u> .
② (현행과 같음) 제44조(등록의 취소) ①
·····································
1
제18조(시・도당 및 지역당
<u>의 법정당원수)</u>
•

월 이내에 생긴 때에는 선거 일 후 3월까지, 그 외의 경우 에는 요건흠결시부터 3월까 지 그 취소를 유예한다.

2. · 3. (생략)

② (생략)

제46조(시·도당 창당승인의 취소)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 위원회는 시·도당 창당승인에 대한 취소사유와 절차를 당현 또는 창당준비위원회 규약에 정하여야 하며, 당헌 또는 규약에서 정한 외의 사유로 창당승인을 취소하는 때에는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대의기관에서 투표로 결정하여야한다.

제47조(해산공고 등) 제45조(자진 해산)의 신고가 있거나 헌법재 판소의 해산결정의 통지나 중 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시·도당 창당승인의 취소 통지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 관리위원회는 그 정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지체 없이 그 뜻

·
2.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6조(시・도당 및 지역당 창당
 승인의 취소)
<u>시·도당 및 지역당</u>
제47조(해산공고 등)
- <u>시·도당 또는 지역당</u>

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9조(허위등록신청죄 등) ① 다 제59조(허위등록신청죄 등) ①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 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1. 허위로 제12조(중앙당의 등 록신청사항) 또는 제13조(시 -----<u>제13조(시</u> •도당 및 지역당의 등록신 ·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의 등록신청을 한 자 청사항)-----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제37조(활동의 자유)제3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ㆍ <u>도당</u>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 <u>당</u>-----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둔 자

② (현행과 같음)

② (생략)